부 령

◉고용노동부령 제211호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1월 24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“5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융자 신청의 범위를 현재 사업주당 5천만원에서 앞으로는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 <고용노동부 제공>

◉해양수산부령 제274호

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1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 인

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관제통신 제원) ① 「해사안전법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호출부호
2. 관제통신시설
3. 조난·긴급·비상 통신용 채널
4. 관제통신용 채널
5. 운용시간

② 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25호 및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